

## 연이은 화물차 탈선원인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 보도 내용 (MBC 뉴스, 9.20) >

◆ 경기 의왕역서 화물용 열차 2칸 탈선...인명피해 없어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어제(9.20.) 발생한 의왕역 구내 화차 탈선과 함께 오늘(9.21.) 연이어 발생한 괴동역 화차 탈선에 대한 원인규명을 철저히 수행하고, 법 위반 등이 확인될 경우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 9월 20일(수) 오전 10:10분경 경부일반선 의왕역 구내에서 냉연\* 코일을 신고 정지 중이었던 차량 2칸(총 21칸)이 내리막 구름 현상 등으로 인해 탈선하였고, 이어 오늘 오전 09:50분 동해선 괴동역 화차 1칸, (총 4칸)이 선로전환기 문제로 탈선하였다.
  - 두 건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열차 운행지연은 발생하지 않았다.
    - \* 고온으로 얇게 눌러 만든 강판을 상온에서 재가공하여 코일형태로 말은 강판
- 연이어 발생한 2건의 화차 탈선 사고에 대해서 국토교통부 철도안전감독관, 철도경찰, 교통안전공단이 안전관리체계 유지\*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고 있으며,
  - \* 차량정리(화차 분리 또는 병합 과정) 등 관련 작업계획, 화차 제동장치 등 유지관리, 선로전환기 운영 및 관리, 기관사 등 종사자 준수사항 위반 여부 등
- 안전관리체계 유지의무를 위반하여 철도 차량 및 시설에 일정금액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과실 등으로 철도차량을 파손하거나 교통방해를 일으켰을 경우 형사상 책임을 물을 계획이다.

### < 과징금 및 처벌 관련 규정 (철도안전법) >

<b>과징금</b>	<b>철도사고로 인한 재산피해액</b>	5억 이상 10억 미만	180백만원
		10억 이상 20억 미만	360백만원
		20억 이상	720백만원
<b>형사처벌</b>	사람이 탑승하여 운행 중인 철도차량을 탈선 또는 충돌하게 하거나 파괴한 사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국토교통부 정채교 철도안전정책관은 “최근 들어 코레일의 화차 탈선이 급증하고, 그 원인이 인적오류, 기술적 요인으로 판명되고 있어 코레일의 철도안전 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원인 규명을 철저히 하여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하였다.

< 최근 3년간 탈선(여객수송 제외)사고 통계 >

연도	사고 건수	원인
2021년	6건 (차량정리 2, 작업차량 4)	인적요인(규정위반 4), 기술적요인(부품불량 1, 차량고장 1)
2022년	9건 (차량정리 5, 화물차량 4)	인적요인(부주의 8), 기술적요인(부품불량 1)
2023년 (9월 기준)	13건 (차량정리 10, 화물차량 2, 작업차량 1)	인적요인(부주의 4), 기술적요인(부품불량 2, 기타 5), 조사중(2)

담당 부서	철도안전정책관 철도안전정책과	책임자	과 장	조성균	(044-201-4600)
		담당자	사무관	이채훈	(044-201-4603)